

금동의

의견 번호	회의 횟수	회의 일자	제 목
88	2회	80. 11. 8	총재 겸 윤수

이 부 개정한다

1980 11 8

경과조치

제외판제: 한국은행법 제72조

법규조항

제약되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서 금융기관 내신증진의

인하물 우도서고지 본진진기우 결이

할 것을 귀의 힘

참고사항 / 제의관계 범주조항

한국은행법 제 72 조

(1)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69 조에

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

결한다.

(2) 금통과운영위원회는 제 69 조에

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

관한 기타 표준과 제정을 정할 수

있다.

2 청부를

가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에 대한 잠정

이율 적용내용(80.4.5 제12차 본위원회 의결 내용)

나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 주미

다 한국은행 대출금주미

라 금융기관 주요 여신업무 이율

개정 (안)

“한국은행 여신업무 현황” 일부개정(안)

구 분		현	개
재활인	상 업 어 림	무대적격업체 발행 양도배서 인수어음 <u>현 100%</u>	무대적격업체 발행 양도배서 인수어음 <u>현 100%</u>
		기타 업체 발행 양도배서 인수어음 <u>현 100%</u>	기타 업체 발행 양도배서 인수어음 <u>현 100%</u>
담	보 수 출 어 림	① 융자기간 135일 이내분 : <u>현 100%</u>	〈현행과 같음〉
		② “수출금융조점” 제6조 및 “외화표시 공급금융조점” 제4조에 의한 90일 초과 융자기간 해당품목의 당해 품목별 소정융자기간 이내분 : <u>현 100%</u>	
대	외 화 표 시 공 급 어 림	③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화표시 건설품자로서 융자기간 180일 초과 1년 이내분 또는 선박 또는 철도차량으로서 융자기간 180일 초과 270일 이내분 : <u>현 100%</u>	③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화표시 건설품자로서 융자기간 180일 초과 1년 이내분 및 선박 또는 철도차량으로서 융자기간 180일 초과 270일 이내분 : <u>현 100%</u>
		④ 전③항 이외의 융자기간 135일 초과 : <u>현 100%</u>	④ 전③항 이외의 융자기간 135일 초과분 : <u>현 100%</u>
		⑤ 대은수출 또는 공급불이행분 : <u>현 100%</u>	⑤ 대은수출 또는 공급불이행분 : <u>현 100%</u>
		이자징수기계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	이자징수기계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

구 분		행	개	항 (단)
당 보 대	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	주정 제2조 제2항 '가'호 대출어음 : 연 10.0%	}	(평행과 같음)
		주정 제2조 제2항 '나'호 대출어음 : 연 10.0%		
		다만 대음수출 신용장 수령불이행분에 대하여는 <u>연 24.0%</u>		다만 대음수출 신용장 수령불이행분에 대하여는 <u>연 22.0%</u>
		이자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쪽은 행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}	(평행과 같음)
	농업, 수산업, 회계사업어음 (농협 및 수협 취급분)	연 10.0%	}	(평행과 같음)
	군 수 산 업 어 음	<u>연 17.0%</u>		<u>연 15.0%</u>
기 타 기 타 기 타	주요원자재 수입어음	<u>연 11.0%</u>		<u>연 10.0%</u>
	「에너지」 절약시설어음	(신 설)		연 7.0%
	기 타 어 음	<u>연 24.0%</u> 다만 금감총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융자대상은 <u>연 18.0%</u>		<u>연 22.0%</u> 다만 금감총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융자대상은 <u>연 16.0%</u>

(경 과 초 처)

1. 1980. 11. 7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 중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은 어음기일까지 수출어음 외화결제공급어음, 군수산업어음, 주요원자재수입어음 및 기타어음 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등 담보어음기일까지 종전이율을 각각 적용한다.
2. 1980. 9. 15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 중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은 어음기일까지, 수출어음 외화결제공급어음, 군수산업어음, 주요원자재수입어음 및 기타어음 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등 담보어음기일까지 1980. 9. 15 이전 이율을 각각 적용한다.
3. 1980. 6. 4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기타어음 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등 담보어음기일까지 1980. 6. 4 이전 이율을 적용한다.
4. 1980. 1. 11 이전에 이미 취급한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어음, 군수산업어음 및 기타어음 중 지방산업육성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등 담보어음에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의 남초 약정기일까지 1980. 1. 11 이전이율을 각각 적용한다.